

기업 소개서

| 구분 | 내역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기업명 | | | | | |
| 설립년월일 | | | | | |
| 대표자 | | 대표번호 | | | |
| 사업자등록번호 | | 법인등록번호 | | | |
| 업태 | | 종목 | | | |
| 홈페이지 | | 주생산품 | | | |
| 회사연혁 | | | | | |
| | | | | | |
| 최근 3년간 매출액(단위 : 천원, 명) | | | | | |
| 구분 | 20년 | 20년 | 20년 | | |
| 국내매출액 | | | | | |
| 해외매출액 | | | | | |
| 합계 | | | | | |
| 고용인원 | | | | | |
| 연구사업 수행실적 | | | | | |
| 연도 | 사업(과제)명 | 수행기간 | 총괄책임자 | 지원금액 | 지원기관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사업계획서

목 차

| | |
|---|--|
| 1. 사업목표 및 내용 | |
| 가. 사업목표 | |
| 나. 사업내용 | |
| 2. 추진체계 및 방법 | |
| 가. 추진체계 | |
| 나. 추진방법 | |
| 다. 추진일정 | |
| 3.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| |
| 가. 기관현황 | |
| 나. 특허/프로그램/디자인/환경신기술, 기타 출원·등록 실적 | |
| 다. 총괄책임자 | |
| 라. 참여인력 | |
| 4. 사업비 구성 | |
| 가. 사업비 총괄 | |
| 나. 비목별 현황 | |
| 5. 증빙자료 | |

사업 요약서

| 구 분 | 내 역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(과제)명 | | | | | | |
| 주관기업명 | | | | | | |
| 참여기업명 | | | | | | |
| 총 사업비 | | | | | | |
| 총사업기간 | 20 년 월 일 부터 ~ 20 년 월 일 까지 (개월) | | | | | |
| 기술(제품)소개 | | | | |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의 특징점 - 재신청 기술의 경우는 기존 신청기술과의 차이점 제시(기 신청기술의 개선·보완 등 기술적 보완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) | | | | | | |
| 주요 사업내용 | | | | |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증화 내용 간략히 기재 - 실증화 목표 [실증하고자 하는 내용, 성능실험 결과(성능평가) 및 목표 지표(기준)] - 실증화 계획 (실증화 시설 규모, 실증 부지 등) 등 | | | | | | |
| 경제적 기대효과(예상) (단위 : 백만원, 명) | | | | | | |
| 구분 | | 착수 연도 (0000년) | 완료 연도 (0000년) | 종료 1년 후 (0000년) | 종료 2년 후 (0000년) | 종료 3년 후 (0000년) |
| 매 출 액 | 국내 | / | / | / | / | / |
| | 해외 | / | / | / | / | / |
| | 계 <small>(증가/전체)</small> | / | / | / | / | / |
| 고용인원 <small>(신규/전체)</small> | | / | / | / | / | / |

작성요령

※ 작성 시 삭제

-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
- 실증화 사업 실시에 따른 추가 효과와 누적 효과를 기재
 - 예시) 사업을 착수한 2025년 당시 종업원(대표자 제외)이 10명이고 연 매출액이 10억 원인 기업에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직원을 1명 신규 고용하고, 사업이 완료된 2026년에 연관 매출액이 3억 원으로 총 매출액이 13억 원이 되고 2명을 신규 고용하였다면,
 - ☞ 매출액 : ('25년) 0 / 1,000, ('26년) 300 / 1,300
 - ☞ 고용인원 : ('25년) 1 / 11, ('26년) 2 / 13
- 고용인원 : 대표자 제외

1. 사업 목표 및 내용

가. 사업목표

제품기술의 개요 및 기술의 특징(우수성) 포함하여 작성

※ 기술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전 성능평가(Lab Test 등) 자료 포함

(예시) 필요시 항목 추가 및 변경 가능

○ 기술 개요

- 실증화 대상 기술 특허 현황

| 연번 | 특허명 | 특허번호 및 등록일 | 특허권자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|
| 1 | | | | |

※ 증빙 서류 첨부

< 성과달성도 평가(성능)지표 >

| 주요 성능지표 | 측정방법 | 단위 | 개발목표 | 비교군(경쟁사 등) | 가중치 (%) |
|----------|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예시 : BOD | | | | | |
| COD | | | | | |
| T-P | | | | | |
| 산소 용해율 | | | | | |

- 실증사업 예정부지 :

< 실증데이터 측정 일정 >

| 주요 성능지표 | 측정방법 | 1차(○○월) (자체/공인) | 2차(○○월) (자체/공인) | 3차(○○월) (자체/공인) | 4차(○○월) (자체/공인) | 5차(○○월) (자체/공인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예시 : BOD | 수질 공정시험 법 | 자체 | 보건환경연 구원 | 보건환경연 구원 | 자체 | 보건환경연 구원 |
| COD | | | | | | |
| T-P | | | | | | |
| 산소 용해율 | | | | | | |

※ 공인측정은 3회 측정을 기본으로 하되, 기술적, 시간적,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회 이상 가능(사전 경기도와 협의)

※ 보건환경연구원 가능항목 외 항목은 별도 공인기관 측정(사업비 지출 가능)

○ 기술사업화의 필요성

-

○ 국내·외 관련 기술

-

○ 시장규모

-

○ 경쟁제품과의 비교분석

-

○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
-

○ 사업화 목표 및 세부내용

-

나. 사업내용(상세히 기재, 시스템 구성도,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)

작성요령

※ 작성 시 삭제

※ 사업계획서 주요내용

○ 제품·기술의 개요

- 기술사업화 필요성 : 대상제품의 기술, 경제·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개발의 필요성
- 국내·외 관련 기술 : 국내·외 기술개발 현황, 문제점 및 향후 전망, 본 기술 관련 특허 현황 등을 객관적, 구체적으로 기재
- 시장규모 : 시장규모는 세계시장과 한국시장을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비교 제시
- 경쟁제품과의 비교분석 : 경쟁사명, 제품명, 판매가격, 국내시장 점유율
-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: 기술적 측면과 경제·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기재

○ 목표 및 세부내용

- 목 표 : 기술사업화 내용과 최종산출물 및 향후 사업화 방향 기재
- 세부내용 : 기술사업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서술, 기술사업화 완료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기재

2. 추진체계 및 방법

가. 추진체계(조직도)

(예시) ※ 상황에 맞게 수정



나. 추진방법

평가지표 달성 등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 시험분석 일정 기재
(연속운전 데이터 5개월 이상, 별도 동절기(12월~2월) 데이터 2개월 이상)

다. 추진일정

| 내 용 | 월 | 2025 | | | | | | 2026 | | | | | |
|-----|---|------|---|---|---|----|----|---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 1 | 2 | 3 | 4 | 5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작성요령

※ 작성 시 삭제

- 추진체계
 - 위의 예시와 같이 기술개발과 관련한 조직도를 구성하여 사업내용의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전·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
- 추진방법
 -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
 - * 세부사업 내용별 수행방법,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, 계획된 과정 등을 기술
- 추진일정
 - 사업내용 항목은 추진전략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
 - 사업내용은 Bar Chart로 표시

3.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

가. 기업현황

| 기관구분 | | 주관기업 | 참여기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기업명 | | | |
| 대표자명 | | | |
| 기업유형 | | | |
| 사업자등록번호 (등록번호, 고유번호 등) | | | |
| 설립년월일 | | | |
| 상시인력 | | | |
| 실무 책임자 | 성명 | | |
| | 소속 | | |
| | 일반전화 | | |
| | 휴대전화 | | |
| | 팩스 | | |
| | 주소 | | |
| | 이메일 | | |

※ 참여기관의 상황에 따라 해당란의 삭제 및 추가 사용

나. 특허/프로그램/디자인/환경신기술, 기타 출원·등록실적

| 번호 | 출원·등록명 | 국가명 | 출원· 등록일 | 출원·등록번호/ 출원·등록자수 | 비고 |
|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다. 총괄책임자

| 성명 | | | 생년월일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|------|--|
| 소속 | | 직위 | 일반전화 | | |
| | | | 팩스 | | |
| | | | 이메일 | | |
| | | | 휴대전화 | | |
| 학력 (대학 이상) | 졸업년도 | 학교 | 전공 | 학위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해당분야 경력 | | | | | |
| 주요업적 (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만 기술) | 관련내용 | | 수행년도 | 지원기관 | |
| | | | | | |

라. 참여인력

| 구분 | 직급 | 성명 | 전공 및 최종학위 | | | | 사업 담당 분야 | 참여율* (%) | 월평균 급여 |
|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| | 학교 | 졸업년도 (학위취득 년도) | 전공 | 학위 | | | |
| 계 | | | | | | | 100 | | |
| 주관 기관 | | | | | | | 30 | | |
| | | | | | | | 30 | | |
| | | | | | | | 20 | | |
| 참여 기관 | | | | | | | 10 | | |
| | | | | | | | 10 | | |

※ 참여율 : 본 사업에 대한 인력별 참여율을 의미하여 합계는 100%이어야 함.
 인건비에 대한 현물계상이 불가하므로 국가과제 등 타 연구사업 참여율을
 고려하지 않음.

4. 사업비 구성

가. 총사업비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합계 | | 현금 | | 현물 | |
|-------|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|
| | 금액 | 비율 | 금액 | 비율 | 금액 | 비율 |
| 계 | | 100% | | | | |
| 지원금 | | | | | | |
| 민간부담금 | | | | | | 주관 00% 참여 00% |

나. 비목별 현황(직접비)

(단위: 천원)

| 비목/세목 | | 세부내역(산출기초) | 금 액 | | | 비고 (현금/현물)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| | | 계 | 지원금 | 자부담 | |
| 계 | | | | | | |
| 재료비 | 재료비 | | | | | |
| 시설비 및 부대비 | 소계 | | | | | |
| | 시설비 | | | | | |
| | 시설부대비 | | | | | |
| 인건비 | 소계 | | | | | |
| |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| ※ 인건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불인정 | | | | |
| 여비 | 국내여비 | | | | | |
| 연구개발비 | 시험연구비 | | | | | |
| | 연구용역비 | | | | | |
| 일반 운영비 | 소계 | | | | | |
| | 사무관리비 | | | | | |
| | 공공운영비 | | | | | |

※ 인건비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불인정(수행업무, 단가, 사용기간 명시) - 작성요령 참조

< 총 사업비 구성 >

- 지원금, 민간부담금의 각 합계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작성(100만 원 미만 절사)
- 민간부담금(자부담)
 - 자부담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의 최소 50%이상은 현금으로 집행해야함
- 자부담 비율(주관기업을 기준으로 함)
 - 중소기업 : 총 사업비의 30% 이상, 중견기업 등 : 50% 이상

< 산출 예시 >**1. 공법 분야**

- 1.1. 중소기업이 신청한 총 사업비가 80,000천 원인 경우, 기업 자부담 24,000천 원, 지원금액 56,000천 원 ---- 자부담 30% ($\geq 30\%$)
- 1.2. 중소기업이 신청한 총 사업비가 115,000천 원인 경우, 기업 자부담 35,000천 원, 지원금액 80,000천원 ---- 자부담 30.4% ($\geq 30\%$)
- 1.3. 중소기업이 신청한 총 사업비가 160,000천 원인 경우, 기업 자부담 80,000천 원, 지원금액 80,000천 원 ---- 자부담 50% ($\geq 30\%$)
- 1.4. 중견기업 등이 신청한 총 사업비가 160,000천 원인 경우, 기업 자부담 80,000천 원, 지원금액 80,000천원 ---- 자부담 50% ($\geq 50\%$)
- 1.5. 중견기업 등이 신청한 총 사업비가 200,000천 원인 경우, 기업 자부담 120,000천 원, 지원금액 80,000천 원 ---- 자부담 60% ($\geq 50\%$)

2. 기타 소재·부품·장치 등

- 2.1. 중소기업이 신청한 총 사업비가 50,000천 원인 경우, 기업 자부담 15,000천 원, 지원금액 35,000천 원 ---- 자부담 30% ($\geq 30\%$)
- 2.2. 중소기업이 신청한 총 사업비가 72,000천 원인 경우, 기업 자부담 22,000천 원, 지원금액 50,000천 원 ---- 자부담 30.5% ($\geq 30\%$)
- 2.3. 중소기업이 신청한 총 사업비가 100,000천 원인 경우, 기업 자부담 50,000천 원, 지원금액 50,000천 원 ---- 자부담 50% ($\geq 30\%$)
- 2.4. 중견기업 등이 신청한 총 사업비가 80,000천 원인 경우, 기업 자부담 40,000천 원, 지원금액 40,000천 원 ---- 자부담 50% ($\geq 50\%$)
- 2.5. 중견기업 등이 신청한 총 사업비가 100,000천 원인 경우, 기업 자부담 50,000천 원, 지원금액 50,000천 원 ---- 자부담 50% ($\geq 50\%$)
- 2.6. 중견기업 등이 신청한 총 사업비가 200,000천 원인 경우, 기업 자부담 150,000천 원, 지원금액 50,000천 원 ---- 자부담 75% ($\geq 50\%$)

〈 비목별 현황 작성 〉

- 사업비에 부가가치세, 건물공사비 (단, 실증시설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등은 제외), 기존시설 철거비, 내부직원 인건비, 자체보유 장비 사용료 등 간접비는 적용 불가(자부담 및 현물로도 반영 불가)
 - 재료비, 제작시공·설치비(부대비용 포함), 분석비용, 전력사용비, 인쇄비, 증권 수수료 등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만 인정
 - 측정비용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측정(사업당 1~3회, 수질 등 법정기준항목에 한함)을 제외한 자체 분석비용 및 외부 공인시험기관 의뢰비용 반영
 - 측정분석에 소요되는 전극류, 초자류, 시약류 등 소모품 및 소모성 부품 등은 재료비에 포함 가능하나, 내용연수가 있는 실험장비 구입비로는 사용 불가
 - 자체 보유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, 분석 및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, 해당 장비의 사용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 및 시약 등은 재료비로 반영 가능(전체 장비 가액은 인정 불가)
 - 전문가 자문료는 사업 당 1~3회 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예정으로 원칙적으로 반영 불가, 추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첨부
 - 회의비,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(운영비)로는 사용이 불가하며, 그 외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름
- 재료비 : 실증시설 제작 원자재, 부품, 시약 등 소요 비용(금형틀 등 불가)
 - 주요품목 단위별로 개략 작성 : 규격/단가 × 수량
- 시설비 및 부대비 : 현장 시공비, 장비비, 시공인력 노무비 등(운송비 등 부대비용 포함)
 - 품목 단위별 작성 : 단가 × 수량
- 인건비 : 내부직원 제외, 사업기간 내 현장관리 임시인력 및 사업 보조인력 사용 비용
 - 세부내역에 업무수행내용, 단가(적용기준 포함), 사용기간 등 명시
 - ※ (참고)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: 시간당 12,152원 / 월환산액 2,539,768원
- 기타 : 시험분석비(시험연구비), 출장비(여비), 실증시설 가동 전기료 및 통신료(공공운영비), 보고서 인쇄비·보증보험료(사무관리비)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(사무관리비) 등
 - 출장비 : 관내 지역(동일 시·군·내) 20,000원/인/일, 관외 지역 50,000원/인/일
 - 보고서 인쇄비·보증보험료 등 : 총 1,000,000 ~ 1,500,000원 이내
 - 기타 사업수행 중 예상되는 소요비용 기재
 - ※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을 위한 사전 문헌, 기술 조사 비용은 지원사항이 아님
 - ※ 100만 원 미만 소액은 통합 작성

참여기관(기업) 참여의사 확인서

| | | | |
|---------|--|-------|--|
| 사업(과제)명 | | | |
| 주 관 기 관 | | 총괄책임자 | |
| 참 여 기 관 | | 대 표 자 | |

상기와 같이 『2000년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』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2025년 월 일

(참여기관명)

(대표자)

_____ (인)

(인)

(직인)

경기도지사 귀하

※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, 단독신청인 경우에는 해당없음.

< 제3호 >

확 약 서

○ 사업명 : 2025년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

본 단체(법인)는 사업신청서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, 이에 따른 법률적, 재정적,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.

또한, 경기도의 「20○○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」의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및 사업추진과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.

선정을 위해 구성한 물기술 실증화 시범사업 보조사업자 선정(심의)위원회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5 년 월 일

단체(법인)명

주 소

대 표 자

(인)

경기도지사 귀하

개인정보 이용(제공·조회) 동의자 목록

□ 주관기업 : ○○○○

| 연번 | 소속 | 직책/직위 | 성명 | 생년월일 | 서명 |
|----|----|-------|----|------|----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□ 참여기업 : ○○○○

| 연번 | 소속 | 직책/직위 | 성명 | 생년월일 | 서명 |
|----|----|-------|----|------|----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경기도지사 귀하

※ 동의 당사자는 반드시 상기 『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』에 기재된 제공 및 이용 내용을 확인하여 숙지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,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.

< 제5호 >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¹⁾

【 목적 】

-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활용

【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 】

- ① (지원이력정보)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
- ②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·휴·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- ③ (인증정보) 기업의 인증·확인정보로서 신청일, 획득일, 유효기간 등

【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 】

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【 동의 효력기간 】

-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
 - 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-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
 - 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기업명
대표자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1) 2021년부터 추가 사용, 특화기업지원과-784호(2019. 7. 22.)

< 제7호 >

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부지(시설) 제공 협약서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사업(과제)명 | | | |
| 사업기간 | | 0000. 00. 00. ~ 0000. 00. 00. (00개월) | |
| 실증화 장소 | | | |
| 주 관 기 업 | 업체명 (대표자) | 과제책임자 (연락처) | |
| | 사업자 등록번호 | 법인등록번호 | |
| | 주소 (연락처) | | |
| 부지 (시설) 제 공 자 | 업체명 (대표자) | 실무담당자 (연락처) | |
| | 사업자 등록번호 | 법인등록번호 | |
| | 주소 (연락처) | | |
| 협약 사항 | 주관기업에 대하여 부지(시설) 제공자는 실증화 장소 및 실험용 원수를 제공하고, 주관기업이 이를 사용함에 협조함. | | |

0000년 00월 00일

주관기업 : (서명 또는 인)

제 공 자 : (서명 또는 인)